

이 사 회 의 사 록

2016년 06월 14일



사회복지법
센터
샌블요양원

이 사 회 의 사 례

1. 개최일시 : 2016년 06월 14일 11:00
2. 개최장소 :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265-30 본 법인의 회의실
3. 총이사수 : 7명
 - 이 사 장 : 박 지숙
 - 이 사 : 경 현옥, 안 성희, 양 건일, 손 민숙
 - 외부이사 : 한 중득, 김 수웅
4. 출석이사수: 5명
 - 이 사 장 : 박 지숙
 - 이 사 : 양 건일, 손 민숙
 - 외부이사 : 한 중득, 김 수웅

대표이사 박 지숙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,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 1 호 의안 : 쉼밭요양원 운영규정 전면 개정(안) 승인의 건 (2016. 07. 01 전면개정)

○ 변경내용

규정 명	변경 내용	비고
1) 운영규정(총칙)	기존 유지	
2) 인사규정	휴직, 징계 등 변경	개정 근로기준법 적용
3) 복무규정	2012.6.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문구 변경	
4) 조직규정	정원표, 조직도, 업무분장표 변경	
5) 급여(연봉제)규정	임금, 상여금, 퇴직금 등 규정	포괄임금제 도입
6) 출장 및 여비 규정	기존 유지	
7) 예산회계규정	기존 유지	
8) 물품관리규정	물품관리직원의 업무, 관리책임자 명시 재물조사, 불용품 처분 방법 등 규정	
9) 위임·전결규정	전결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고,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	
10) 운영위원회규정	사회복지사업법(2012.1.26.),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준수(2012.8.3.)	
11) 노사협의회규정	쉼밭요양원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	

박지숙 이사장 : 쉼별요양원 운영규정이 1973년에 최초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왔으나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[별표 5] 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. 운영규정”의 충족을 위하여,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. 개정 내용은 설명드린 위의 표와 같습니다.

양건일 이사님 : 그동안 사용하던 운영규정이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잘 검토하고 개정안을 만드셨다고 생각됩니다. 1호 의안에 동의합니다.

손민숙 이사님 : 전면 개정위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재청입니다.

김수웅 이사님 : 삼청입니다.

박지숙 이사장 : 이사님의 재청과 삼청으로 운영규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제 2 호 의안 : 환경개선준비금(특별회계) 사용의 건

○ 사유 : 시설 내, 외부 공사 건수(3) 발생

○ 공사 장소 및 내용

1. 1층 주출입구 도어, 외부 산책로, 농기구창고 외 내부공사
: 배회 어르신 사고 방지위한 설비, 어르신의 안전한 산책위한 설비 등
2. 3층 확장 공사(화장실 개조)
: 3층 생활관을 어르신 침실로 개조하여 입주 정원 증원 계획
3. 1층 입구 캐노피공사
: 어르신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 시 차량 승하차시에 눈, 비로 인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.

박지숙 이사장 : 요양원은 향후 시설 노후화에 의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. 건축 후 13년이 지난 본 시설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위에 설명 드린 대로 시설 내.외부 공사를 위해 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.

손민숙 이사님 : 이번 공사가 그간 적립된 환경개선준비금으로 가능합니까?

박지숙 이사장 : 네, 가능합니다. 적립금의 목적대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여 어르신들께서 더욱 쾌적하고, 안전하게 지내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욱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, 10년 후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립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

한종득 이사님 : 환경개선을 위해 적립되어있는 자금이니, 시설과 어르신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2호 의안에 동의합니다.

양건일 이사님 : 재청입니다.

김수웅 이사님 : 삼청입니다.

박지숙 이사장 : 환경개선 준비금의 사용 건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제 3호 의안 : 2016년 법인(1차), 시설(제2차)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

〈 법인 〉

[추경 사유]

- 세입 : 후원금 수입증가, 이월금 증가
- 세출 : 사무비 증가, 전출금 증가

2016년 본 예산액(A)	2016 1차 추경예산액(B)	증감액(B-A)	
		금액	비율(%)
176,950	247,598	70,648	39.9

〈 시설 〉

[추경 사유]

- 세입 : 법인 전입금과 잡수익(특별회계)에 따른 세입액 증가
: 보조금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변동
- 세출 : 2016년도 인건비 확정과 시설비 등으로 세출액 변동

(단위 : 천원)

2016 1차 추경예산액(A)	2016 2차 추경예산액(B)	증감액(B-A)	
		금액	비율(%)
1,695,119	1,851,679	156,560	9.2

박지숙 이사장 : 제2호 의안에서 말씀드린 환경개선 준비금의 사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.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대로 법인과 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손민숙 이사님 : 법인의 후원금 갑자기 증액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?

박지숙 이사장 : 수녀원 본원에서 법인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후원해주셨습니다. 하여, 법인 추경에서는 세출의 법인 전출금을 증액시켰고, 시설에서 공사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.

양건일이사님 : 노후된 시설의 내,외부공사를 위해 환경개선준비금을 적절한 시기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3호 의안에 동의합니다.

손민숙 이사님 : 재청입니다.

김수용 이사님 : 삼청입니다.

박지숙 이사장 : 이사님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법인과 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제 4 호 의안 : 입주 정원 증원의 건

박지숙 이사장 : 3층을 보수함으로써 12명의 어르신을 증원할 예정이며, 이로 인해 전체 입소정원은 60명에서 72명이 됩니다. 아울러 입주 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추가모집(24명→30명) 예정입니다.

손민숙 이사님 : 어르신 12명이 증원되면 직원들이 힘들겠지만, 이 좋은 시설을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4호의안에 동의합니다.

양건일 이사님 : 요즘 직원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고하셔야겠습니다.
저도 동의합니다.

김수웅 이사님 : 삼청입니다..

전원 이사 삼청이요 하다.

박지숙 이사장 : 이것으로 이사님들의 심의를 거쳐, 승인이 필요한 안건들이
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
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
다.

2016년 06월 14일
사회복지법인 썬블원
논산시 은진면 탐정로 265-30

참석자 : 대표이사

박 지



이 사

양 건



이 사

손 민



외부이사

한 종



외부이사

김 수

